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장기근속 시 재정지원 등>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71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장기근속 시 재정지원	3
2.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5
3. 대학의 고용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 마련	8
4.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및 지원근거 마련	10
5. 자치단체 일검험 관련 사업장 출입·조사 등 근거 신설	13

I. 제안경위

2024년 6월 24일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6.7%로 전체 실업률 3.0%의 2배를 초과하는 등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청년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청년이 처한 개인적 삶의 문제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이의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 마련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이에 중소기업체에 청년이 장기근속할 경우 중소기업체와 해당 청년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층의 취업 촉진 및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이 선호할 만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장기근속하여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체 및 해당 청년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4항 신설).

- 나.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위탁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으로 확대하고,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정부 및 민간 등은 각 직능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직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의3제3항 신설).
- 다. 대학 등이 청년에게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의5 신설).
- 라. 정부는 임금, 고용안전성 등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할 만한 중소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6 신설).
- 마.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직장체험 기회 제공 시 비용 지원이 가능함을 고려하여, 행정조사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장기근속 시 재정지원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정부가 중소기업체에 청년이 취업하여 장기근속할 경우 중소기업체와 해당 청년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7조제4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 ③ (생략)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정부는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장기근속하여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체 및 해당 청년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체에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여부 외에 불필요한 보고 등 해당 중소기업체의 자율적인 경영을	⑤ ----- 제4항까지의 ----- ----- ----- ----- ----- -----

저해하는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중소기업체가 ①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②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③외국인 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청년 미취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개정안은 현행 지원근거에 더하여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청년층의 취업 촉진 및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체의 경영 개선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현재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 및 장기근속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²⁾을 수행 중인바, ‘장기근속’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청년 미취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으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22년~'24년(3년 한시사업))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제공하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명확한 범위·요건(전문성 등) 및 효과적인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노력의무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現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①
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직업적성 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위탁 시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정부 및 민간 등의 효과적인 직업지도에 대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청년들에게 보다 내실있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민간의 노력의무 규정 신설을 통해 효과적인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촉진한다는 데에 입법적 의의가 있어 보임.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속하고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므로,

청년 직업지도 관련 전문성 있는 기관이 해당 프로그램 제공 민간위탁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최소한의 노력의무 부과하는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임.

3. 대학의 고용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정부가 대학등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8조의5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5(대학등의 고용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학등이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정부가 대학등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³⁾ 현재 대학의 고용서비스 제공사업은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학에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는 직업지도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취업역량 강화·취업알선 등 다양한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② 정부는 대학 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취업지원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음.

〈 정부지원 대학의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대학 재학·졸업생 및 지역청년 대상 취업상담,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통한 경력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24. 121개교, 377억원)
-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대학 저학년은 직업·진로 탐색과 설계, 고학년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및 훈련·일경험 연계 등 취업역량 향상 지원('24. 53개교, 389억원)

이에 개정안은 직업지도 프로그램과 함께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알선 등을 포함하여 대학등의 고용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년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어보임.

다만, 고용노동부는 별도 조문 신설이 아닌 현행법 제8조의3제2항의 개정으로도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조문 예시: 정부는 대학 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및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4.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및 지원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6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8조의6(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및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에서 매년 청년 고용실적,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청년친화강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은 해당 기업의 사업장 단위로 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및 취소,</u>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검토의견

고용노동부는 청년이 궁금해 하는 기업의 정보를 발굴·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있음('24. 533개소)⁴⁾.

[표]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현황

(기준: 사업년도, 단위: 개소)

'17	'18	'19	'20	'21	'22	'23	'24
1,118	1,105	1,127	1,280	1,222	1,214	1,000	533

선정된 기업에게는 채용지원서비스, 재정금융지원, 병역특례지원 및 공유재산 임대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짐.

[표] 청년친화강소기업 주요 혜택

*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워크넷 청년친화강소기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정보를 관리하고, 청년 및 구직자에게 좋은 일자리 정보 제공
* (기업정보 제공) 네이버에서 기업 검색 시 기업 정보 및 선정 현황 제공
* (재정금융지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 우대, 신한은행 금리 우대 및 신용보

4)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기준

구 분	선 정 기 준
임 금	① 1년차 신입사원 평균연봉, ② 3년 후 임금상승률, ③ 성과급 및 복리후생
일생활균형	① 일과 삶의 균형, ② 복지공간 도입, ③ 자기학습 지원 등
고용안정	① 정규직 비율, ② 청년근로자 비율, ③ 청년 고용유지율
청년 고용실적	① 최근 2년 평균 청년 고용증가율 또는 ② 최근 2년 평균 청년고용증가 인원
혁신역량	① 각종인증 보유, ② 기업 포상 수상, ③ 지적재산권 보유 ④ 현장 탐방기, 기업안내서, 행사 지원 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증기금 보증 우대

- * (선정·선발 우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지사화 산업 선정 시 우대,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사업 참여 시 우대
- * (정기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 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 시 고용비율 계산 시 가중치 부여
- * (병역특례지원) 병역특례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등
- * (공유재산 임대 시 우대) 공유재산 임대 시 수의계약 가능 및 사용료 감경

그런데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⁵⁾ 개정안은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원 사업은 청년 고용실적, 임금 수준 및 일·생활 균형 등 근로조건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아 청년이 선호할 만한 중소기업체 또는 중견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의 청년 취업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확대해 나가려는 데에 입법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선정 취소는 해당 기업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되는바, 취소사유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5) 現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에 근거하여 지원 중

5. 자치단체 일경험 관련 사업장 출입·조사 등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현행법 제8조의2⁶⁾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 시설에 대한 출입 및 조사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보고 및 검사) ① (생략)	제18조(보고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하여 업무실태 및 장부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8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 일경험 사업에 재정을 투입⁷⁾하고 있으나, 부정수급 등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6)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 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24.4월 기준 총 115개 사업, 15,688명 지원(66,904백만원)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 시설에 대한 출입 및 조사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재정지원사업에 원활한 관리·감독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근거로 조례가 아닌 법률상 관계 공무원의 시설 출입 및 조사 근거를 두는 사례를 찾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검사)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장 출입 및 검사 등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39

8) 제29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